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2023-0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13조및「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한다),「취업규칙」제73

조,「건설기술진흥법」제62조및「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에따라

(주)아스텍임직원,관계수급인(근로자를포함한다)의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하며,시설물및건

설공사안전관리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규정은(주)아스텍(이하“회사(會社)”라한다)의사업장에서근무하는모

든종사자(임직원,관계수급인및관계수급인근로자를포함한다)에게적용한다.

②이규정에서정한사항중회사(會社)의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서특별히정한경우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을우선적용한다.

③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등에따른다.

제3조(정의)①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임직원”이란회사(會社)「직제규정」제4조와제5조에의한회사(會社)의임원,일반직,운영직,전문직,특정직직원과회사(會社)「실무직관리규정」제2조의실무직,회사(會社)「연구

개발규정」제2조의위촉연구직및회사(會社)「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2조의기간제근로자등을말한다.

2.“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3.“시설”이란다음각목의사항을말한다.

가.회사(會社)가「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안전조치의무를지는사업장

나.회사(會社)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관리주체로서관리하는

시설물

다.회사(會社)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관리하는국가핵심기반

라.회사(會社)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등에따라안전환경을확보할의무를

지는연구실및실험실

마.회사(會社)가발주한건설공사의현장

4.“도급”이란명칭과관계없이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그밖의업무를타인에게맡기는계약을말한다.

5.“도급인”이란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그밖의업무를도급하는사업주를말한다.다만,건설공사발주자는제외한다.

6.“수급인”이란도급인으로부터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그밖의업무를도급받은사업주를말한다.

7.“관계수급인”이란도급이여러단계에걸쳐체결된경우에단계별로도급받은사업주전부를말한다.

8.“건설공사”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따른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문화재수리공사

9.“발주건설공사(이하“발주공사”라한다)”란회사(會社)에서도급하는건설공사로서회사(會社)에
서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공사를말한다.

10.“건설공사발주자”란건설공사를도급하는자로서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
자를말한다.다만,도급받은건설공사를다시도급하는자는제외한다.본규정에
서는회사(會社)가건설공사발주자에해당한다.

11.“건설공사도급인”이란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해당건설공사를최초로도급받은수급인으로서건설공
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는자를말한다.본규정에서는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會社)와계약을체결하는시공자를말한다.

12.“안전관리”란각종사고의원인이되는불안전한상태나조건또는행동을사전에발견하여이를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와

활동을말하며,회사(會社)임직원의안전관리(이하“산업안전”이라한다),회사(會社)에서발주한건설공사
의안전관리(이하“건설안전”이라한다),회사(會社)시설물의안전관리(이하“시설안전”이라한다)로구분
한다.

13.“보건관리”란임직원의건강유지·증진및사업장환경개선을위한조치와활동을말한다.

14.“사고”란업무와관련하여임직원,수급인및관계수급인근로자,발주공사근로자,국민(이하“임직원등”
이라한다)의부상또는건강상장해등의인명피해나 회사(會社)또는임직원
등의재산상의손실이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15.“산업재해”란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재료·전기·가스·증기·분진등에의하거

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한다.16.“중대재해”란다음의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따른중대재해

1)사망자가1인이상발생한재해

2)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2인이상발생한재해

3)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10인이상발생한재해

나.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중대산업재해

1)사망자가1명이상발생

2)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

3)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

다.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중대시민재해

1)사망자가1명이상발생

2)동일한사고로2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

3)동일한원인으로3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질병자가10명이상발생

17.“안전총괄부서”란안전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본사부서를말한다.

18.“보건총괄부서”란보건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본사부서를말한다.

19.“시설총괄부서”란「직제규정시행세칙」제4조에따라각사업별시설의관리업무를총괄하는
부서를말한다.

20.“본사주관부서”란「직제규정시행세칙」제4조에따라각사업별로업무를담당하는본사
부서를 말한다

21. "실무부서"란본사를포함한해당사업장소속직원의안전및보건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건설공사공정관리,시공,준공등공사시행에관한업무를직접수행하는부서와준공된

시설물별로점검,보수,개량등관리에관한업무를직접수행하는모든부서를말한다.

22. "사업주관부서"란건설공사설계및공사의발주를주관하는부서를말한다.

23. "공사시행부서"란건설공사발주자의지위에서건설공사안전관리활동지도감독및공정관리,시공,준공등공사시행에관한업무를직접수행하는부서를말한다.

24. "안전보건관계자"란「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및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말한다.

25. "법정안전관계자"란안전보건관계자외에관계법령에따라안전관리에관한직책에선임된자를말한다.

26. "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이란「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등의요구사항에따른업무를관리하기위하여회사(會社)에서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②이규정에사용하는용어의뜻은이규정에서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

다)·「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한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

하“시설물안전법”이라한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시설물안전법시행령”이라한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이하“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이라한다)및「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①회사(會社)는산업재해예방을위해예산·인력·제도등운영·관리에있어

안전및보건과관련된사항을최우선으로하여야한다.

②사장은공사(公社)에적합한안전보건경영방침을담아안전보건경영현장으로간결하게문서화하고시행일을표기하여공사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한다.

③안전총괄부서의장은매년안전보건경영방침의적정성을검토하고,필요한경우공사의경영환경등의여건을고려하여안전보건경영방침및안전보건경영현장의내용을변경하여야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의주요내용에대해서는매년수립되는안전경영책임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④안전총괄부서의장및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경영방침을회사(會社)내모든구성원과이해관계자가인식하고실현할수있도록각사업장에게시하여야한다.

제5조(준수의무)①회사(會社)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함으로써임직원등의안전과보건을유

지·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1.관계법령과이사규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준수

2.안전보건에관한정보를임직원등에게제공

3.근로조건을개선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

인한건강장해예방

②임직원등은관계법령및이규정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제6조(안전및보건관리조직)①회사(會社)의안전및보건관리조직체계는별표1과같으며,사장

은별표1의조직을총괄하는자로서이규정제3조제16호의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

서정한다음각호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1.공사가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각목에따른조치가.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나.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다.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 조치

라.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2.공사가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원료나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결함으로인한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

안전을위하여다음각목에따른조치

가.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나.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다.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 조치

라.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3.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설치,관리상의결함으로인한그 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다음각목에따른

조치

가.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나.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다.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 조치

라.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②안전책임관(CSO,ChiefSafetyOfficer,이하“CSO”라한다)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2에 따라회사(會社)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는자로안전총괄부서소속부문의상임이사로서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을총괄하여관리하는자로안전보건관계자및법정안전관계자를선임하고 관계기관에이를신고또는보고등조치를취하여야한다.안전보건관계자의선임기준

및직무는별표2,별표3과같다.

④사장은제1항부터제3항의조직·직책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권한을부여하고시설·장비·예산등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하며,제1항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사장이따로 정한다.

⑤안전총괄부서의장은규정제7조,제8조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해당업무를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평가하는기준을마련하고,실무부서의장은그기준에따라반기1회

이상평가·관리하여야한다.

⑥제5항의안전관리평가에관한세부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사업장별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본사:경영이사

2.5개본부,연구원및인재개발원:본부장,연구원장,인재개발원장

3.지사(단):각부서부서장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별표2에따른직무를총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8조(관리감독자)①사업장별관리감독자는다음각호와같다.

1.본사:각부서부서장

2.5개본부,연구원및인재개발원:각부서부서장(인재개발원의경우부장)

3.지사(단):각부서부장(직제상부장선임이여러본부서의경우차장)

②관리감독자는별표2에따른직무를수행한다.

③관리감독자는안전보건규칙별표3에해당하는작업시작업시작전점검사항을확인하고이상이발견되면즉시수리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하고작업하도록하여야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관리감독자에게제2항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권한을부여하고지원을하여야한다.

제9조(안전관리자)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의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지도·조언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이하“안전관리자”

라한다)를선임하고별표2에따른직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②안전관리자를선임하는경우그자격은시행령별표4에따른다.

③법에따라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안전관리자를선임하거나교체하는경우또는법제17조제5항에따라안전관리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

우에는선임하거나위탁하는날부터14일 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의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지도·조언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이하“보건관리자”

라한다)를선임하고별표2에따른직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②보건관리자를선임하는경우그자격은시행령별표6에따른다.

③법에따라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보건관리자를선임하거나교체하는경우또는법제18조제5항에따라보건관리자의업무를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

우에는선임하거나위탁하는날부터14일 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에안전및보건에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지도·조언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이하“안전보건관리담

당자”라한다)을두어야한다.다만,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가있거나이를두어야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상시근로자20명이상50명미만인사업장일경우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1명이상선임해야한다.

1.제조업

2.임업

3.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4.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5.환경정화및복원업

③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선임하는경우그자격은시행령제17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자격을갖추었거나,시행령제21조에따른보건관리자의자격을갖추었거나,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였어야한다.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별표2에따른직무를수행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선임한경우그선임사실및제4항에따른업무를수행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제12조(산업보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3.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 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산업보건의는 별표 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會社)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직원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작업지휘자) 실무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업무담당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산업안전 관련 정책·제도의 전파, 현장 작동성 관리

등 안전코디네이터 역할을 위하여 산업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회사(會社)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제2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

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협조등) 안전 및 보건 총괄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재해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부서의 장 및 그 밖

의 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수립·시행)①실무부서의장은매년2월말까지당해연도의임직원안

전보건교육의대상,내용,방법등을포함한안전보건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은제31조제2항제1호다목과연계하여수립할수있다.

③제1항의안전보건교육계획수립시타법령에적용되는소방·가스·전기·승강기등의관련안전보건교육을포함하여수립할수있다.

④실무부서의장은제21조부터제26조의교육을고용노동부에서지정하는안전보건교육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근로자의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하여자체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

⑤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교육을실시한후설문조사,시험등으로교육성과를측정하여다음연도의안전보건교육계획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라정기적으로안전

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사무직종사근로자:매분기3시간이상

2.사무직외의근로자:매분기6시간이상

3.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연간16시간이상

②제1항의안전보건교육의내용은별표4와같다.

제22조(신규채용시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를신규로채용한때에는작업투입전해당

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다음각호와같이실시해야한다.

1.일용근로자:1시간이상

2.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8시간이상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내용은별표4와같다.

제23조(작업내용변경시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작업내용을변경하여근로자를배치하는경우

작업배치전해당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다음각호와같이실시해야한다.

1.일용근로자:1시간이상

2.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2시간이상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내용은별표4와같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를시행규칙별표4제1호라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종사시키고자하는경우해당업무와관계되는안전보건에관

한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교육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1.일용직근로자:2시간이상

2.일용직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16시간이상

②제1항제2호에따른특별교육은최초작업에종사하기전4시간이상을실시하고,12시간은3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실시할수있다.

③제1항제2호에따른특별교육대상작업이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경우2시간이상으로단축하여실시할수있다.

④특별교육실시방법은시행규칙별표5제1호라목을따른다.

⑤특별교육을실시한경우에는제22조,제23조의규정에의한교육을실시한것으로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110조에서정하는대상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근로자에게교육하여야한다.이경우

교육을받은근로자에대해서는해당시간만큼제21조부터제24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실시한것으로본다.

- 1.대상화학물질을제조·사용·운반또는저장하는작업에근로자를배치하는경우
- 2.새로운대상화학물질이도입된경우
- 3.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정보가변경된경우

②제1항의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1.대상화학물질의명칭(또는제품명)
- 2.물리적위험성및건강유해성
- 3.취급상의주의사항
- 4.적절한보호구
- 5.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 6.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지를이해하는방법

제26조(직무교육)①실무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안전보건교육계획수립시이를

반영해야한다.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안전관리자
- 3.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다른직무교육의시간과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신규교육: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나.보수교육:6시간이상,신규또는보수교육이수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3개월사이

- 2.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

가.신규교육:34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나.보수교육:24시간이상,신규또는보수교육이수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3개월사이

제27조(안전보건교육강사)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관리감독자
- 3.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4.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5.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및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6.산업보건의
- 7.공단에서실시하는해당분야의강사요원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8.기타「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정하는자격을갖춘자

제28조(기록·보존)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교육을실시한경우그결과를별지제1호서식의안전보건교육
일지예기록·유지하여야한다.제20조제4항에따라위탁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교육확인서등을받아보존하여야한다.

- 1.교육일시및장소
- 2.교육담당자
- 3.교육과정및내용
- 4.교육대상자및참석인원
- 5.그밖의교육결과를증명하기위해필요한사항

제4장사업장안전관리

제29조(안전경영책임계획수립및실행)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6조
에따라안전관리대상사업·시설의안전관리를위하여다음연도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매년12월31일까지환경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수립한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1.전년도안전경영활동실적및평가
- 2.안전경영방침및안전경영활동계획
- 3.안전조직구성·인원및역할
- 4.안전에관한시설및예산
- 5.산업재해및안전사고감축목표
- 6.그밖에안전관리에관한계획

③안전총괄부서의장은환경부와협의를거쳐안전경영책임계획을수립하고이사회등의승인을거쳐확정한다.

④안전총괄부서의장은안전경영책임계획의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하며,매년1월31일까지전
년도안전경영책임계획의이행실적을환경부에점검받아야한다.

제30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작성및공시)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6
조의1에따라매년1월31일까지당해연도안전경영책임계획의주요내용및전년도안

전경영책임계획에대한점검내용,전년도재해현황등「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별표1에서정하는
사항을포함하여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안전총괄부서의장은환경부와협의를거쳐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작성하여야하며「공공기관의운영
에관한법률」제11조,제12조및「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따라공시해야한다.

제31조(안전관리기본계획)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매사업년도의안전
관리기본계획을매년1월31일까지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산업안전에관한사항
 - 가.공사의안전경영방침
 - 나.안전사고예방활동
 - 다.재해율관리
- 2.시설안전에관한사항
 - 가.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사항
 - 나.시설물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이하"안전점검등"이라한다)및성능평가에관
한사항
- 3.건설안전에관한사항
 - 가.재해율등연간안전관리목표및추진방향
 - 나.안전관리를위한연간추진계획등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의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자체세부추진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다만,중기시설물관리계획은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

1.산업안전세부추진계획

가.안전보건관리체계및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나.안전보건관계자및법정안전관계자선임

다.안전보건교육및법정안전관계자안전교육실시계획

라.유해화학물질및유해·위험한기계·기구·설비등안전관리

마.안전점검의날등안전문화운동실시계획

바.사업장재해저감활동계획

사.사업장위험성평가

아.작업환경측정및건강진단실시계획

자.안전보호구유지관리계획

차.그밖의안전사고예방활동

2.시설안전세부추진계획

가.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조직·인원·장비

나.긴급상황발생시조치체계

다.시설물설계·시공·감리및유지관리관련설계도서의수집및보존

라.안전점검등,성능평가및보수·보강실시계획

마.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비용

3.건설안전세부추진계획

가.안전관리목표및추진방향

나.안전교육및연간안전활동계획

다.건설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

라.그밖에안전을위한재해예방활동방안등

4.중기시설물관리계획(제31조제2항제2호의각목이외에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다.)

가.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대한성능목표및관리기준설정에관한사항

나.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성능목표달성방법에관한사항

다.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안전점검등,성능평가및유지관리이행에관한사항

라.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대한안전등급및성능평가결과에관한사항

마.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성능변경(개축,교체,철거등)에관한사항

바.그밖에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안전점검등,성능평가및유지관리를위하여국토교통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③시설물안전법제7조(시설물의종류)에따른제1·제2·제3종시설물을관리하는실무부서의장은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규정제31조제2항제2호의시설안전세부추진계획을국토교통부의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 이하 'FMS'라한다)으로매년2월15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④시설물안전법제40조에따른성능평가대상시설물을관리하는실무부서의장은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제31조제2항제4호의중기시설물관리계획을해당시설물의성능평가가완료된연도의다음연도부터5년마다2월15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32조(비상조치계획)①실무부서의장은제8장의위험성평가등에서도출된중대재해,화재폭발등사회적
물의를일으킬수있는사고발생가능성에대한대비및대응을원활하게진행할수

있도록비상상태별시나리오와대책을포함한비상조치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4호의각목의사항이포함되어어야한다.

③비상대비및대응내용에는임직원,국민,인근주민및환경에대한영향,대응,홍보방안등을포함시켜야한
다.

④비상조치계획은회사(會社)의「리스크관리규정」제10조에따른리스크관리계획과준용할수있다.

제33조(법령요지등의게시)실무부서의장은법제34조에따라법및시행령의요지및안전보건관리규정을각
사업장의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

리알려야한다.

제34조(안전보건표지설치및게시)①실무부서의장은유해하거나위험한장소·시설·물질에대한경고·지시·
안내·금지또는그밖에근로자의안전및보건의식을고취하기위한사항등을그림,

기호및글자등으로나타낸표지(이하“안전보건표지”라한다)를근로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설치하거나
게시하여야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종류,형태,색채,용도및설치·부착장소,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제38조부터제40
조에따른다.

③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안전보건표지를설치할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른외
국인근로자를고용한경우해당근로자의모국어로작성된안전보건표지를부착

하여야한다.

제35조(안전조치)①실무부서의장은다음각호에따른소속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

여안전보건규칙에따라필요한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1.기계·기구,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폭발성,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전기,열,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4.작업시불량한작업방법등에의한위험

5.다음각호의장소에서작업을할때발생할수있는위험

가.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나.토사·구축물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다.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라.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

②실무부서의장은안전관리대상사업·시설에대해주기적으로안전에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미흡사항
발생시조치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안전관리대상사업·시설에서작업하는근로자에대하여작업장에출입하기

전개인보호구착용준수,음주자작업장출입금지등의필수안전조치준수여부를관리감독자로하여금점검
하게하고안전조치를준수하지않은근로자에대해서는퇴거조치를하는등작업장안전조치를철저히이행하
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④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가별표5에따른위험작업을할경우에는가급적2인1조로근무할수있도록배치하
여야한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실무부서의장은근속기간이6개월미만인근로자가별표5에따른위험작업을할경우
에는단독으로업무를수행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36조(안전작업허가서발급및이행)①실무부서의장은사업장또는공사현장(지배관리장소도포함)에서 다음각호의작업을수행할경우에는작업을담당하는관리감독자로하여금작업허가

서를발급,승인한후작업을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1.화기작업

2.전기(정전)작업

3.밀폐공간작업

4.고소작업

5.굴착작업

6.중장비및중량물취급작업

7.그밖에실무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작업

②관리감독자(또는실무부서의장)는발급된작업허가서를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작업허가제도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37조(안전장구및보호구)①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의안전확보를위해작업환경과조건에적합

한보호구및색상을구분한안전복장을지급하고착용토록하여야한다.

②근로자는작업환경과조건에적합한보호구를착용할권리와무가있으며,실무부서의장으로부터보호구를지급받거나착용지시를받은근로자는그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보호구를지급하는경우별지제5호서식의보호구지급대장에기록하여야하며,지급한보호구의교체주기및관리상태를점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다만,안전화등직원개인에게지급된보호구는교체주기까지개인이직접관리하여야한다.④실무부서의장은보호구를구입할때에는법령에정한바에따라검정에합격한제품으로구입을하여야한다.다만,법령에의한검정대상이아니거나검정이면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⑤실무부서의장은보호구를공동사용하여근로자에게질병이감염될우려가있는경우개인전용보호구를지급하고질병감염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⑥안전보호구및안전복장의지급관리기준은별표7과같다.

제38조(기계·기구및설비의방호조치)①실무부서의장은법제80조에따라동력으로작동하는기계·기구에 대한방호조치를하여야하며,방호조치가정상적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방호조

치와관련된장치를상시적으로점검하고정비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방호조치를해체하려는경우시행규칙제99조에따라필요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를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설비로서시행령제78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것(이하“유해·위험기계등”이라한다)을사용하는경우유해·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

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검사를받은후사용하여야한다.

④실무부서의장은제3항에따라안전검사를받은경우합격표시필증을알아보기쉽게부착하고관리하여야한다.

⑤실무부서의장은법제84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기계등또는법제89조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구매할경우인증또는신고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39조(전기설비안전)①실무부서의장은전기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따라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거나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위탁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전기설비의고장또는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을때에는방지에필요한사전조치를취하고
고장또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확대방지및복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③전기설비(수배전반,그밖의고압전기등)가설치된장소에는모든사람의주의를환기시키기위하여전기안
전관리자의책임하에위험표시를하여야한다.

④기타전기설비관련안전을위한사항은안전보건규칙제2편제3장을따른다.

제40조(소방시설안전)①실무부서의장은「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및「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며소방안

전관리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1.해당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계획서작성
- 2.자위소방대조직
- 3.피난시설,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관리
- 4.소방훈련및교육
- 5.소방시설이나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관리
- 6.화기취급의감독
- 7.기타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

②실무부서의장은「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소방시설물의안전과기
능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안전점검(안전관리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는정밀점검을포함)을실
시하여야한다.

제41조(교통재해예방)①실무부서의장은사업장내를주행하는모든차량이소정의주행로와제한속도를엄
수하도록속도제한표지판설치,과속방지턱주의표지판설치등사업장내교통재

해예방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구내를주행하는차량에의한재해를방지하기위해사업장내를출입하는모든사람이표시
되어있는소정의통로및횡단장소를이용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③임직원등은업무를위해도로를자동차로주행하는경우에는「도로교통법」등관계법규를준수하여안전운
행을하여야한다.

제42조(대국민이용시설안전관리)①유역본부의장및실무부서의장은물문화관,안전체험관,대강당등일
반국민이이용할수있는회사(會社)의시설(이하“대국민이용시설”이라한다)에대하

여비상대피안내도부착등안전사고예방활동을하여야한다.

②유역본부의장및실무부서의장은제1항의대국민이용시설에대한재난및안전사고예방안내서,팜플렛,안
전표지,안내방송,안전교육등을시행하여이용자가숙지하여스스로행동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43조(위험물질의보관및사용)①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규칙별표1에규정된위험물질을보관하는경
우작업장외별도의지정된장소예보관하여야하며,작업장내부에는작업에필요한

최소량만을두어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위험물질보관장소에는화기물질의휴대및관계자의출입을금지해야하며,이를위해해
당장소에출입금지표지를부착하고,해당물질의위험성을게시하여근로자에게위험장소임을알려야한다.

제44조(밀폐공간내작업시의조치등)①실무부서의장은소관사업장내에밀폐공간에서근로자에게작업및 감독을하도록하는경우질식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수립·운영하여야한다.

- 1.사업장내밀폐공간의위치파악및관리방안
- 2.밀폐공간내질식·중독등을일으킬수있는유해·위험요인의파악및관리방안
- 3.밀폐공간작업시사전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한확인절차
- 4.안전보건교육및훈련
- 5.그밖에밀폐공간작업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에관한사항

②실무부서의장은반기별1회이상긴급구조훈련을실시하고,제1항에따라수립한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매년1회이상평가후필요한내용을수정하여보완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밀폐공간작업시안전보건규칙제619조부터제625조및제636조부터제644조에따라작업전산소·유해가스농도측정,환기,대피용기구비치등의조치후작업을수

행하여야한다.

제45조(사업주의작업중지)①실무부서의장은수행사업및소관발주공사에대하여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중대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사업및공사를중지시

키고근로자를작업장소로부터대피시키는등필요한안전보건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폭염·한파,미세먼지등이상기후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안전관리대상사업·시설에서작업하는현장근로자가충분한휴식을취하며작업하거나,필요시

작업을중지하도록하여야한다.또한작업의특성을고려하여근로자보호용품을지급하거나,실외작업의경우에는실내작업으로전환하여작업할수있다.

③실무부서의장은중지내용과조치결과를별지제4호서식의작업중지요청기록대장에기록하고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46조(근로자의작업중지)①근로자는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에는작업을중

지하고대피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근로자는지체없이실무부서의장또는관리감독자등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제2항에따른보고를받으면안전및보건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실무부서의장은제3항에따른안전및보건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완료한경우별지제4호서식의작업중지요청기록대장에보고내용,조치결과를기록하고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⑤실무부서의장은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다고근로자가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에는제1항에따라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근로자에대하여해고나그밖의불리한

처우를해서는아니된다.

제47조(경영진안전보건점검)①사장은분기별1회이상,사장과상임감사를제외한상임이사는1

회/격월이상작업장안전점검을시행하여야한다.

②안전총괄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안전점검후그결과와개선계획을환경부에제출하여야한다.

제48조(안전지도점검)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필요한경우안전지도점검반을편성하여안전지도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본사주관부서의장은안전총괄부서의안전지도점검반편성에협조하여야한다.

②안전총괄부서의장은안전지도점검결과시정을요하는사항이있는경우해당실무부서의장에게시정을요구하여야하며시정요구를받은실무부서의장은필요한조치를하고이를기록·보존하여야한다.

제49조(안전점검의날행사등)①실무부서의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6에따라자체안전점검반을편성하여사업장또는공사현장에대하여매월4일,14일,24일을안

전점검의날로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안전관리대상사업·시설에대해주기적으로안전에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미흡사항발생시조치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안전점검에서발견된결함사항에대해서는즉시해결책을강구하여시정조치하여야한다.

제50조(시설물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①실무부서의장은시설물의기능유지및안전관리를위하여시설물안전법제11조,제12조,제13조및제40조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하여안전점검등및

성능평가를시행하고그결과를관리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시설물안전법제55조및시설물안전법시행령제35조에따라FMS운영관리자를지정하고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모든보수·보강실적등시설물이력변경사항은즉시관련내용을FMS에입력하고안전총괄부서의장에게승인요청을하여야한다.

③안전총괄부서의장은제31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시설물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라안전관리업무가적정하게수행되는지관리하여야하며,FMS에입력된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실적과보

수·보강이력사항을확인하여승인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④시설총괄부서의장은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지행계획검토(일정및예산포함)등안전관리업무에대한실무부서의활동을관리하여야한다.

⑤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결과시설물안전법시행령제18조에서정하는중대한결함이발견된때에는즉시관계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안전총괄부서의장및시설총괄부서의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⑥인재개발원의장은제5항에따른시설총괄부서의장에대한보고및

통보는생략한다.

⑦실무부서의장은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업무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며,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⑧실무부서의장은안전총괄부서주관으로시행하는안전점검시에는운영중인모든시설물을점검대상에포함하여야한다.

제51조(외부기관의점검)실무부서의장은외부기관의안전점검일정이예정되거나수검받은경우안전총괄부서로그사실을알려야하며,안전점검내용및결과를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을통

하여등록·관리하여야한다.

제5장사업장보건관리

제52조(보건조치)실무부서의장은다음각호에따른소속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따라필요한보건조치를하여야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의한건강장해

3.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제53조(유해인자관리)실무부서의장은발암물질등유해인자로인해발생될수있는산업재해나

직업병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법제107조에따라유해인자허용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54조(작업환경측정)①실무부서의장은법정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회사(會社)가사업을도급한경우회사(會社)사업장에서작업하는관계수급인및그근로자를포함

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있는경우에는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한다.

②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및측정방법등은법제125조및관련시행령,시행규칙에따른다.

③실무부서의장은작업환경측정결과를해당사업장근로자(관계수급인및관계수급인근로자를포함)에게알려야하며,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시설·설비의

설치·개선또는건강진단의실시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55조(휴게시설의설치)①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관계수급인의근로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도록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휴게

시설을갖추어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사업의종류및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등시행령제96조의2에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장에제1항에따라휴게시설을갖추는경우시행규칙제194조의2에서정하는설치·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③실무부서의장은매분기별지제6호서식의체크리스트에따라점검을실시하고,근로자들의불편사항발생및개선요구시조치하여야한다.

④각사업장의휴게시설에대한관리및활용은필요시노·사간협의를따라변경할수있다.

제56조(근로자건강진단)①회사(會社)에서실시하는건강진단의종류는그실시시기및대상을기준으로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1.일반건강진단
- 2.특수건강진단
- 3.배치전건강진단
- 4.수시건강진단
- 5.임시건강진단
- 6.자율건강진단

②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의실시시기,대상및방법등은법제129조부터제135조및관련시행령,시행규칙에따른다.

③보건총괄부서의장은건강진단계획을수립하고해당부서별검진일정,검진대상자,검진기관및건강진단절차등건강진단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④임직원은회사(會社)에서제1항에따라실시하는건강진단을정당한이유없이기피하거나고의로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⑤실무부서의장은근로자건강진단의결과를근로자의건강보호및유지의의 목적으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57조(건강상담)①실무부서의장은직원의건강관리와질병의조기발견을위하여전문의를초청,

건강상담을실시할수있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건강상담결과이상있는직원에대하여는전문의료기관에의뢰하여치료하도록유도한다.

제58조(유해물질취급및관리)①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규칙등관련법령에따라유해물질을취급하는경우건강장해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자로하여금작업을지휘하고환기설비의이

상유무점검및보호구착용상황을감시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게해야한다.

②제1항의관리감독자는안전보건규칙제420조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을취급하는장소에관계근로자의출입을금지시키고그뜻을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제5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①실무부서의장은법제110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한다)을취급하는직원이쉽게보거나접근할수있는장소에

각대상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를항상게시또는갖추어두거나,대상화학물질을취급하는직원이물질안전보건자료를쉽게확인할수있는전산장비를갖추어두어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대상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공정별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관리요령을게시하여야하고,이관리요령은유해·위험성이유사한대상화학물질의그룹별로작성하여게시할수있다.

1.대상화학물질의명칭

2.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물리적위험성

3.안전및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4.적절한보호구

5.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③실무부서의장은작업장에서사용하는대상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서행규칙제170조로정하는방법에따라경고표시를하여야한다.다만,용기에이미경고표시가되어있는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0조(근골격계질환예방)①실무부서의장은안전보건규칙제656조제1호의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하여안전보건규칙제656조제2호의근골격계질환이발생될우려가있는경우예방을위한관

리방안을마련하고이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②임직원은회사(會社)에서제공하는근골격계질환예방조치에적극적으로따라야하며,작업시작전,작업중적절한스트레칭을실시하여 스스로질환의예방에힘써야한다.

제61조(근로자건강유지및증진)①실무부서의장은임직원이자장시간근로,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및정밀기계조작작업등신체적피로

와감정노동에따른정신적스트레스등(이하“직무스트레스”라한다)이높은작업을하는경우

에직무스트레스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안전보건규칙제669조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재난또는중대사고발생사업장의사고조사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업무트라우마등건강장해발생시심리치료등을받을수있도록안전보건관리를위해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자격또는면허에의한취업제한)①실무부서의장은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으로서「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별표1에서정하는작업의경우그작업에필요한자격·면허·

경험또는기능을가진근로자가아닌자에게그작업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②제1항에따른작업에대한취업제한은「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별표1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작업을직접하는사람에게만적용하며,해당작업의보조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63조(근로시간연장제한)①실무부서의장은법제139조에따라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종사

하는근로자에게는1일6시간,1주34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필요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외에작업과휴식의적정한배분및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조건의개선을통하여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4조(질병자의근로금지및취업제한)①실무부서의장은전염의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자,근로로인하여병세악화가우려되는자에대하여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

하여야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근로를금지또는제한받은직원이건강을회복한때에는의사의의견을들어지체없이업무에복귀시켜야한다.

제65조(건강증진센터등설치·운영)①회사(會社)는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유지·증진하기위한건

강증진센터를본사및본부등에설치·운영할수있다.

②회사(會社)는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시필요한시설,예산,인력및장비등을지원한다.

제6장도급사업안전및보건관리

제66조(도급의제한)①실무부서의장은법제58조에따라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유해하거나위

험한작업에도급하여서는아니된다.

②실무부서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중법제59조에따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작업에대해도급을할수있다.

제6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①실무부서의장은사업을도급하여관계수급인근로자가회사(會社)사업장에서작업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회사(會社)근로자와관

계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업무를총괄하여관리하는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선임기준은별표2와같다.

③제1항에따른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하며,직무수행에필요한권한을가진다.

1.제8장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2.제45조에따른작업의중지

3.제69조에따른도급시산업재해예방조치

4.법제72조에따른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집행감독및그사용에관한관계수급인

간의협의·조정

5.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사용여부확인

제68조(도급인의안전및보건조치)사업을도급하는실무부서의장은관계수급인의근로자가회사(會社)사업장에서작업하는경우자신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의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안전및보건시설의설치등필요한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한다.다만,보호구착용의지시등관계수급인근로자의작업행동에관한직접적인조치는제외한다.

제69조(도급에따른산업재해예방조치)사업을도급하는실무부서의장은관계수급인근로자가공사(公社)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 1.도급인과수급인을구성원으로하는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및운영
 - 2.작업장순회점검
 - 3.관계수급인이근로자에게하는법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위한장소및자료의제공등지원
 - 4.관계수급인이근로자에게하는법제29조제3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실시확인
 - 5.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대비한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등훈련
- 가.작업장소에서발파작업을하는경우
- 나.작업장소에서화재·폭발,토사·구축물등의붕괴또는지진등이발생한경우
- 6.위생시설등시행규칙제81조에서정하는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장소의제공또는회사(會社)가설치한위생시설이용의협조
 - 7.도급사업의합동안전·보건점검실시
 - 8.같은장소에서이루어지는회사(會社)·관계수급인근로자의작업에있어서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및보건조치등의확인
 - 9.제8호에따른확인결과회사(會社)및관계수급인근로자의작업혼재로인하여화재·폭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작업시기·내용등의조정

제70조(도급인의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제공등)①다음각호의작업을도급하는실무부서의장은그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시행규칙제83조에서정

하는바에따라해당작업시작전에수급인에게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여야한다.

- 1.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등의유해성·위험성이있는화학물질중안전보건규칙별표1및별표12에서정하는화학물질또는그화학물질을포함한혼합물을제조·사용·운반또는저장하는반응기·증류탑·배관또는저장탱크로서안전보건규칙별표7에서정하는설비를개조·분해·해체또는철거하는작업

- 2.제1호에따른설비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

- 3.질식또는붕괴의위험이있는작업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작업

가.산소결핍,유해가스등으로인한질식의위험이있는장소로서안전보건규칙별표18에따른밀폐공간에서이루어지는작업

나.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등의붕괴우려가있는장소에서이루어지는작업

②실무부서의장이제1항에따른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를해당작업시작전까지제공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인이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③실무부서의장은수급인이제1항에따라제공받은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에따라필요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를하였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④수급인은제2항에따른요청에도불구하고실무부서의장이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도급작업을하지아니할수있다.이경우수급인은계약의이행지체에따른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71조(도급인의관계수급인에대한시정조치)사업을도급하는실무부서의장은관계수급인근로자가회사(會社)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수급인또는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받은작업

과관련해서법또는시행령,시행규칙을위반하면수급인에게그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이경우수급인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조치에따라야한다.

제72조(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검토및안전보건수준평가)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도급시재해예방 능력및기술이있는수급인의선정과적정안전보건비용부담여부를평가·확인할수있

는기준과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사업의일부를도급으로운영하는경우사고예방을위해계약체결전수급인으로 부터안전보건관리계획서등을제출받아검토하여수급인의안전보건수준평가를하고부적합한경우개선요 청하고적합할경우에만착공할수있다.개선되지않을경우에는착공과동시에공사중지를하여야한다.

③수급인의안전보건수준평가에대한세부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7장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관리

제73조(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관리)①건설공사사업주관부서및공사시행부서는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 건설공사의계획,설계및시공단계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건설공사발주자의

소관사항이행및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의이행여부를검토,확인하고지도하여야한

다.

1.법제15조부터제24조및제62조,건진법제64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안 전·보건관리조직구축의확인

2.법제31조및제31조의2,건진법제65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근로자안 전·보건교육실시의확인

3.법제67조및시행령제55조,시행규칙제86조에따른건설공사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및확인

4.건진법제62조,같은법시행령제98조및제99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이작성·제출한건설 공사안전관리계획의검토의뢰및승인,건설공사도급인의이행여부확인

5.법제68조및시행령제56조에따른안전보건조정자의지정및이행

6.법제69조에따른회사(會社)또는건설공사도급인의공사기간단축및공법금지

7.법제70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공사기간의연장요청에따른조치

8.법제71조에및시행령제58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설계변경의요청에 따른조치

9.법제72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건진법제63조에따른안전관리비의계상및반영10.법제73조및 시행령제59조부터제62조에따른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실시

11.법제75조및시행령제63조부터제65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의노사협의체구성·운영

12.법제36조,「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업무기준」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위 험성평가실시

13.「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업무기준」에따른회사(會社)및건설공사도급인의건설업안전보 건경영시스템(KOSHA-MS)운영및준수

14.건진법제62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공 사현장안전점검실시·제출,회사(會社)의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

15.건진법제62조제11항,같은법시행령제101조의2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 가설구조물의구조적안전성확인및제출

16.국토교통부「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9조에따른회사(會社)및건설공사도급인 의정기적안전관리회의시행

17.건진법제67조에따른회사(會社),건설공사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시대응

18.건진법제62조제7항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의안전종합보고서제출및같은법제62조제8항 에따른회사(會社)의안전종합보고서검토·관리

19.건진법제65조의2에따른휴일건설공사시행의제한

②그밖에세부절차및필요한사항은「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기준」에따른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74조(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실무부서의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

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를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장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한 경우(이하 이장에서 “도급사업”이라 한다)에도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별도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회사(會社)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75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실무부서의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답

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 방법, 유의 사항 등에 관한 실시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6조(위험성평가 교육) 회사(會社)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부서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비정형 작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 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실무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 풀림)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제78조(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① 실무부서의장은 관리하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 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

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실무부서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④위험성평가담당자는허용불가능한유해·위험요인은 제거·대체·변경, 공학적대책, 관리적대책, 개인보호구사용순서로개선대책을수립하고업무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⑤실무부서의장은위험성평가실행결과, 남아있는유해·위험요인에대해서는게시, 주지(사후교육)등의방법으로근로자에게알려야하며, 개선대책이행완료후에는평가표에개선완료일,

업무담당자서명·날인하여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⑥실무부서의장은도급사업계획단계에서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결과에따른위험성감소대책을설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직접내역등), 지방서등에반영하고수급인에게평가결과를제공하여야한다.

⑦실무부서의장은도급사업착수전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위험성평가결과를점검하고필요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보완조치하도록요구하여야하며, 이후수급인이실시한위험성평가감

소대책이행여부를점검하고부실한경우보완조치를요구하여야한다.

⑧위험성평가실시에대한구체적방법은「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건설공사에대한위험성평가업무는「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기준」에

따른다.

제79조(위험성평가문서화)①실무부서의장은위험성평가의결과와조치사항을기록·보존할때에

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위험성평가를위해사전조사한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공정의명칭또는구체적인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파악

4. 위험성추정및결정

5. 위험성감소대책및실행

6. 위험성감소대책의실행계획및일정

7. 위험성평가사전·사후교육결과등

8. 그밖에사업장에서필요하다고정한사항

②위험성평가에관한문서는제77조에따른실시시기별위험성평가를완료한날로부터최소3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9장사고조사및대책수립

제80조(안전사고의구분)안전사고는다음각호로구분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會社)직원의안전사고(이하"직원안전사고"라고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따른업무상사고및업무상질병

나. 「재해보상과배상규정」제4조제2호에따른회사(會社)인정업무상재해

다. 중대재해로이어질가능성또는대외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우려되는사고

2. 회사(會社)에서사업을도급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급인의안전사고

(이하"도급안전사고"라고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따른업무상사고및업무상질병

나. 「재해보상과배상규정」제4조제2호에따른회사(會社)인정업무상재해

다. 중대재해로이어질가능성또는대외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우려되는사고

3.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會社)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공사의 안전사고(이하 '건설안전사고'라 한다)

가. 건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

나. 건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다. 법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라.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4.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會社)가 운영·관리 중인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사고(이하 '시설안전사고'라 한다)

가.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붕괴되거나 전도되는 등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나. 시설물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제81조(응급조치등) ①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는 부상자 및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고 발생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즉시 연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부상자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복구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2조(안전사고 발생 보고) ① 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제80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6의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사고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규

정」에서 정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제80조제1호가목의 산업안전사고 중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 2.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재해

③ 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문이 사를 반장으로 하여 본사 주관 부서와 사고 발생 부서 등으로 구성된 사고 대응반을 운영하여 대외 기관 사고 조사 대응, 부상자 및 시설 관리 등 사고 대응을 실시하고 별표6의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의 장은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CSO를 반장으로 하여 본사 부서로 구성된 비상대응합동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사고 영향 검토, 사고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별표6의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안전사고 조사) ① 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제80조제1호가목 및 다목, 같은 조제2호부터 4호까지 해당 하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

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사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해자인적 사항 및 피해 정도

2.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3. 사고 관련 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4. 그 밖의 사고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사항

②안전사고관련자는제1항에의한조사시입회·검사·측정및증빙서류제출등안전사고조사에성실히임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안전총괄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사고의중요성,조사의필요성등을 검토하여사고조사반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이경우사고발생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조사결과를안전 총괄부서의장에게제공하고현장및증거보존등사실규명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법제2조에따른직원의중대재해

2.건진법제2조제10호에따른건설사고및제67조제3항에따른중대건설현장사고

3.이규정제80조제4호에따른시설안전사고

4.법및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중대재해로이어질가능성또는대외적으로물의를일으키거나

우려되는사고

④제3항에따른사고조사시공사내외부전문가및관계부서와합동으로조사반을구성하여조사할수있으며, 사고조사반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84조(안전사고조사결과보고)①사고발생부서의장은안전사고내용을조사한후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안전총괄부서의장에게별지제3호서식에따라안전사고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1.재해자및목격자진술서(별지제3의2호서식)각1부

2.현장도면(또는약도)

3.사고현장사진

4.그밖의조사결과증빙에필요한사항

②안전총괄부서의장은제83조제3항에따라사고조사를한경우안전사고원인및조사결과,재발방지대책등 을포함한보고서를작성하고,유사한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③사고발생부서의장은안전사고발생30일 이내에별지제3의3호서식에따라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본 사주관부서의장및안전총괄부서의장은재발방지대책의적정성을검토·확인하여

야한다.

제85조(사고조사위원회)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안전사고조사결과에대한적정성검토및보완을

위하여CSO를주관으로하는사고조사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86조(아차사고등록·공유)①아차사고는인적·물적파해가발생하지않은안전사고를말하며,안전총괄부 서의장및해당부서의장은사례가산업안전관리포털시스템에등록·공유되도록적극지

원해야한다.

차사고를종합분석한후,사고사례집을발간하여산업재해예방업무에활용하게하여야한다.

제10장보칙

제88조(안전관련제안제도)①안전총괄부서의장은소속직원및작업장근로자가안전을위한개

선과제를제시할수있도록안전관련제안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②안전총괄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제안된개선과제를충실히검토후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③안전관련제안제도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제89조(포상)안전총괄부서의장또는보건총괄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

인또는부서에대하여인사담당부서에포상을의뢰할수있다.

- 1.모범적으로안전및보건활동을한개인또는부서
- 2.재해및사고피해의최소화를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한개인또는부서

제90조(문서보존연한)①회사(會社)는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기간보존하여야한다.

- 1.산업재해발생기록:3년
- 2.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의선임에관한서류:3년
- 3.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2년
- 4.안전·보건상의조치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류:3년
- 5.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에관한서류:3년
- 6.작업환경측정에관한서류:5년(단,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은30년)
- 7.건강진단에관한서류:3년
- 8.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라실시한검사결과에대한서류:2년
- 9.기타안전보건에관련된일반적인서류:3년

②제1항에의해보존하여야하는서류중전산입력자료가있을경우그서류를대신하여전산입력자료를보존할수있다.

제91조(규정의관리)안전보건관리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때에는법등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장의규모나특성에적합하도록개정할수있으며,법령의최신제·개정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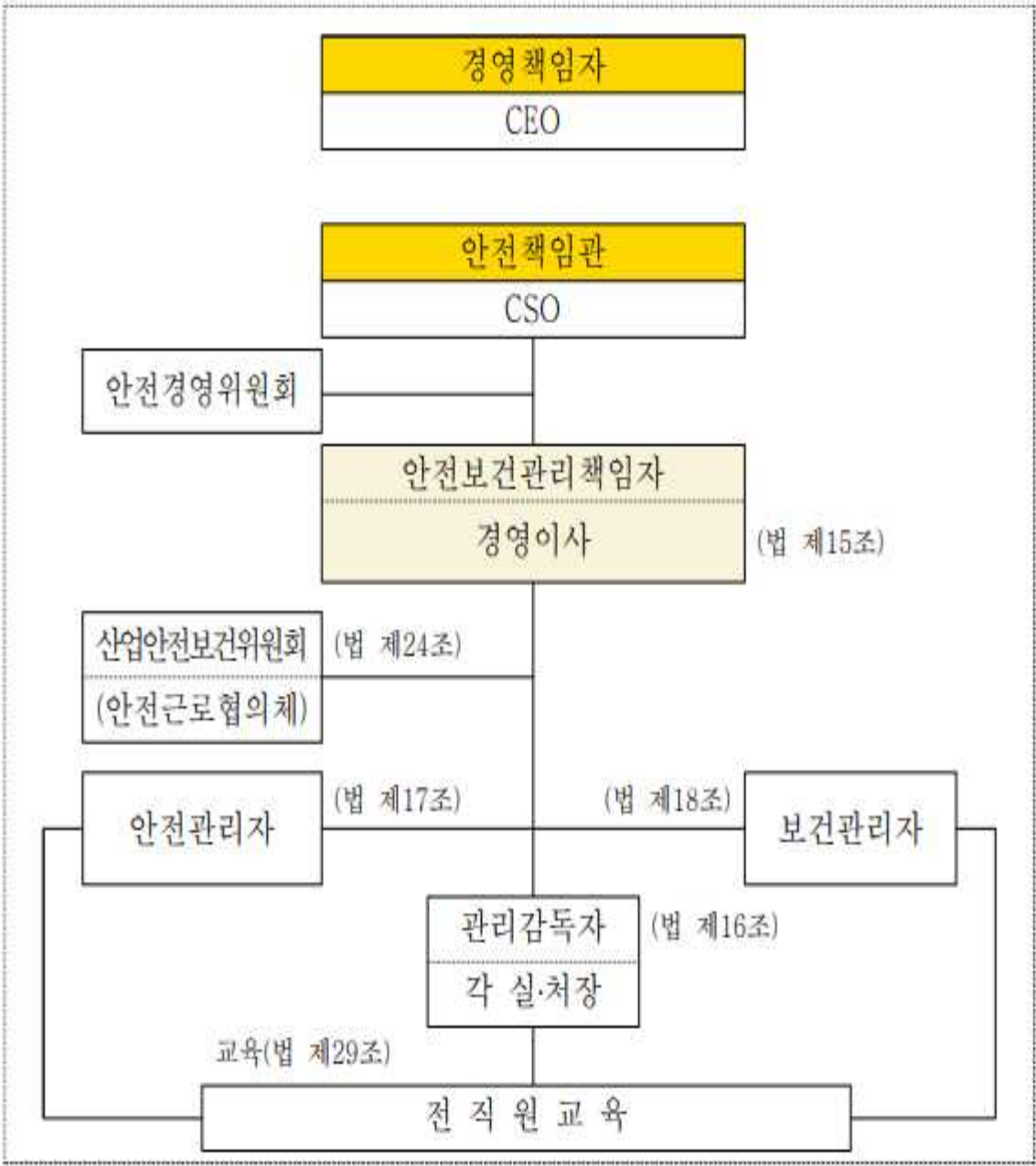
확인하여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영하여야한다.

부칙(2023.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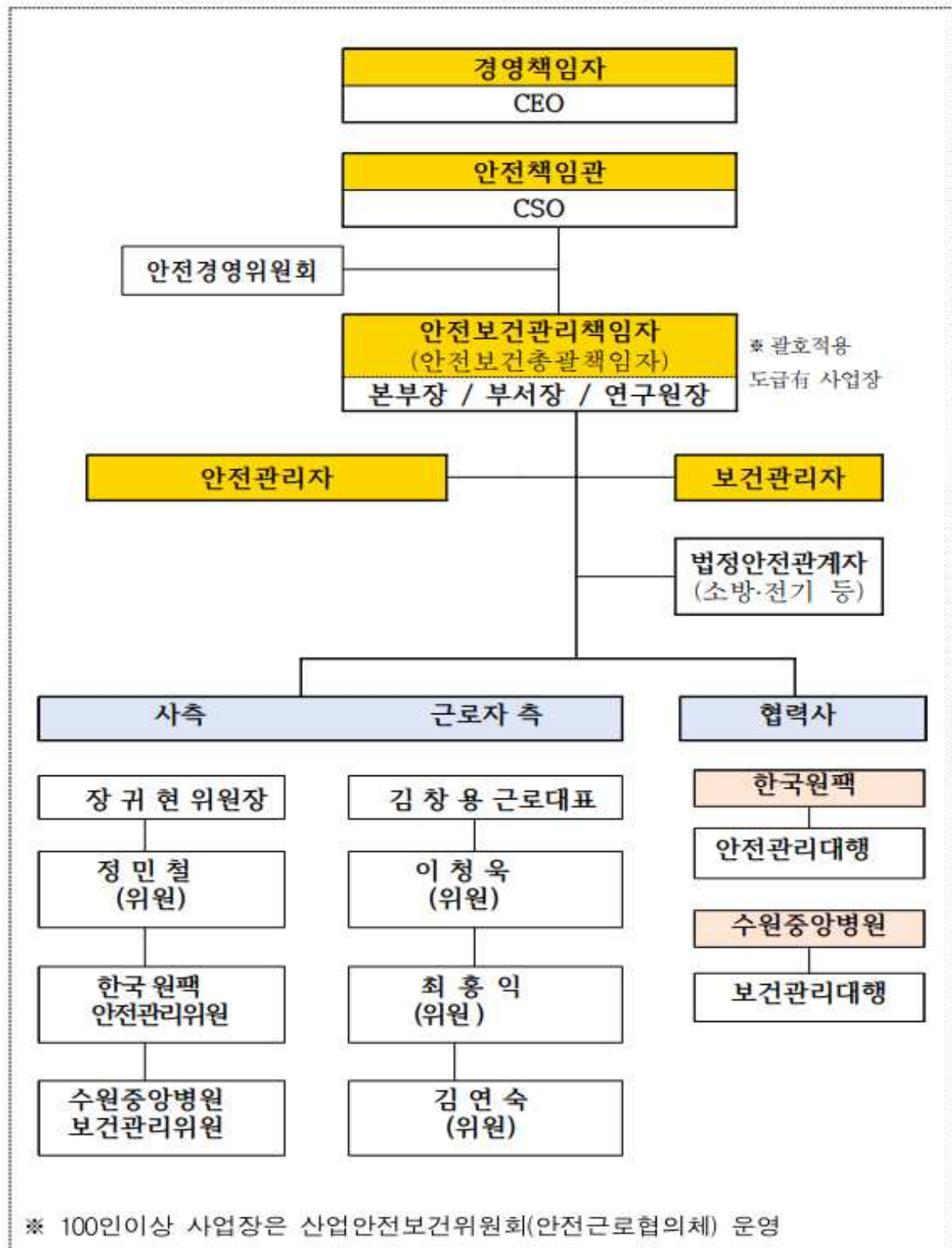
이규정은2023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제6조 관련)

□ 본 사



□ 본부 및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제6조제3항 관련)

체 계	선 임 기 준	직 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자격 - 본사 : 경영이사 - 연구원 : 연구원장 - 본부 : 본부장 - 현장 : 부서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 1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도급사업 수급인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 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허용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혁신실-839, 22.4.19)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체 계	선 임 기 준	직 무
보건 관리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사업 수급인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혁신실-839, 22.4.19)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협의의 직무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가 마 8.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 보건의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중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2조	1.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체 계	선 임 기 준	직 무
관리 감독자	대상 : 전 사업장 자격 - 본사 : 각 실·처장 - 연구원 : 각 처·소장 - 본부 : 각 처장 - 현장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부장 차장(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다음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대상 : 도급사업 시 직원 및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 및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자격 - 본사 : 경영이사 - 연구원 : 연구원장 - 본부 : 본부장 - 현장 : 부서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대상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자격 - 본사 : 해당없음 - 현장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정안전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제6조제3항 관련)

안전관계자	선임기준(관계법령)	직무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3조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7.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2.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안전관계자	선임기준(관계법령)	직무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1.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3.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4.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4.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승강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2.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확인·점검 및 관련 교육 이수 2.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 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 시간 이상
나.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 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 (제 40 호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 시간 이상 - 2 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	-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시 : 해당연도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가능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시 : 제22, 제23조에 의한 교육 면제 가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6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기한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6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나. 안전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다. 보건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3.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관련)

대 상	교육내용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공통내용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 개별내용 : 시행규칙 별표 7 제 1 호 라목 각 호의 내용
마. 물질안전보건교육자료 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위험작업

대분류	중분류	위험 작업내용	위험 장소
공 통	기술진단	- 진단업무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유해위험 기계기구	- 유해위험 기계기구(크레인, 압력용기, 컨베이어 등) 정비·보수 작업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전기, 수배전 설비	- 고압(750V) 이상의 전기 취급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펌프 설비	- 펌프 정비·보수 작업 - 분해점검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검침업무	- 검침업무	- 밀폐공간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점검·정비·보수 작업	-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설비 반입·반출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 작업	-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작업(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질 취급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대분류	중분류	위험 작업내용	위험 장소
상수도 시설 (정수시설)	착수공정	- 계측기 및 채수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약품투입공정	- 약품 저장설비 청소, 약품주입설비 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응집공정	- 응집지 청소 - 응집기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침전공정	- 침전지 청소 - 슬러지 배출설비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여과공정	- 여재 보충 작업 -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정수지	- 정수지청소 -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밀폐공간
	소독공정	- 염소용기 교체작업 - 소독설비 정비·보수 작업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배출수처리 공정	- 배출수지 청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탈수공정	- 탈수기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상수도 시설 (배수시설)	재염소 설비	- 재염소설비 정비·보수 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관로상 각종 밸브실	- 밸브실 내 점검·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수충격 방지설비	- 수충격 방지설비 점검·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배수지	- 배수지 청소,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밀폐공간

대분류	중분류	위험 작업내용	위험 장소
발전시설	발전소	- 발전설비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갤러리실	- 갤러리실 점검	- 밀폐공간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밸브실	- 밸브실 내 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댐 시설	댐 본체	- 채수 작업 - 부유물 수거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여수로	- 문비 점검·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취수설비	- 권양설비 및 와이어로프 점검·정비·보수 작업	
	방수로	- 계측기 점검·정비·보수 작업	
	배수문	- 계측기 점검·정비·보수 작업	
댐 시설	관개용수설비	- 게이트 점검·정비·보수작업 - 밸브 점검·정비·보수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비상방류밸브	- 밸브 점검·정비·보수 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위험 작업내용 중 “점검”이란 운영중인 시설물을 육안으로 이상 유무 관찰, 표시 계기류 확인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정비·보수”란 운영중인 설비의 단순 육안점검을 제외하고 설비의 예방 보전, 일상 보전, 개량 보전 등 설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놓는 활동을 의미한다.

※ 상수도시설 및 댐 시설 운영관리 단계의 위험 작업을 분류하였으며, 그 외 시설(다기능보, 하수처리시설, 산업용수 등)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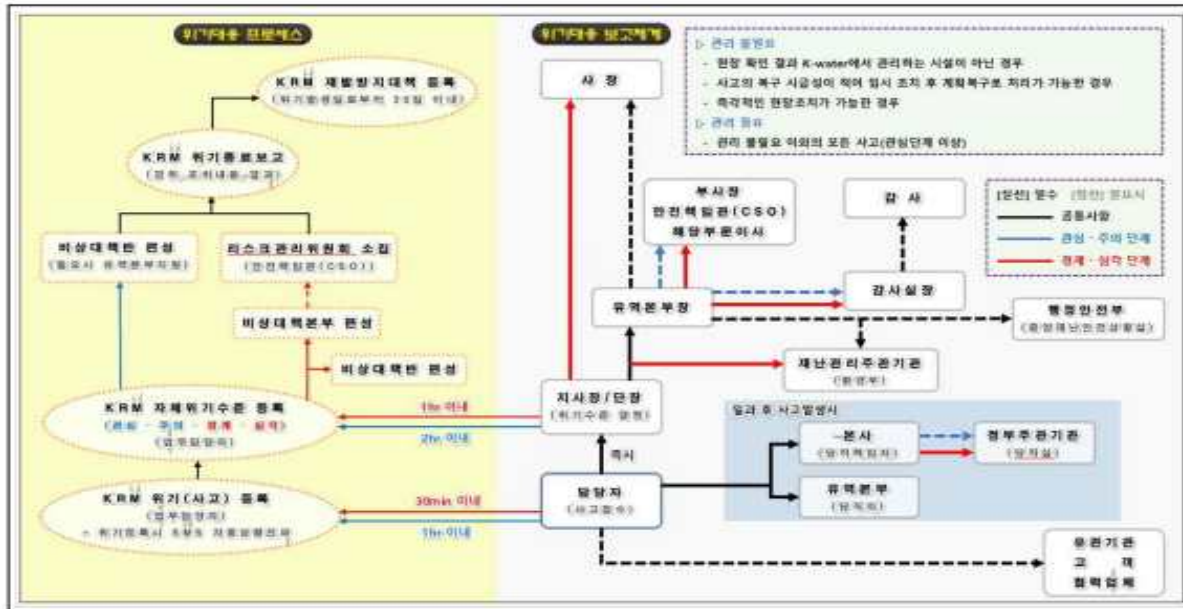
기 시설의 위험 작업내용 및 위험 장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위험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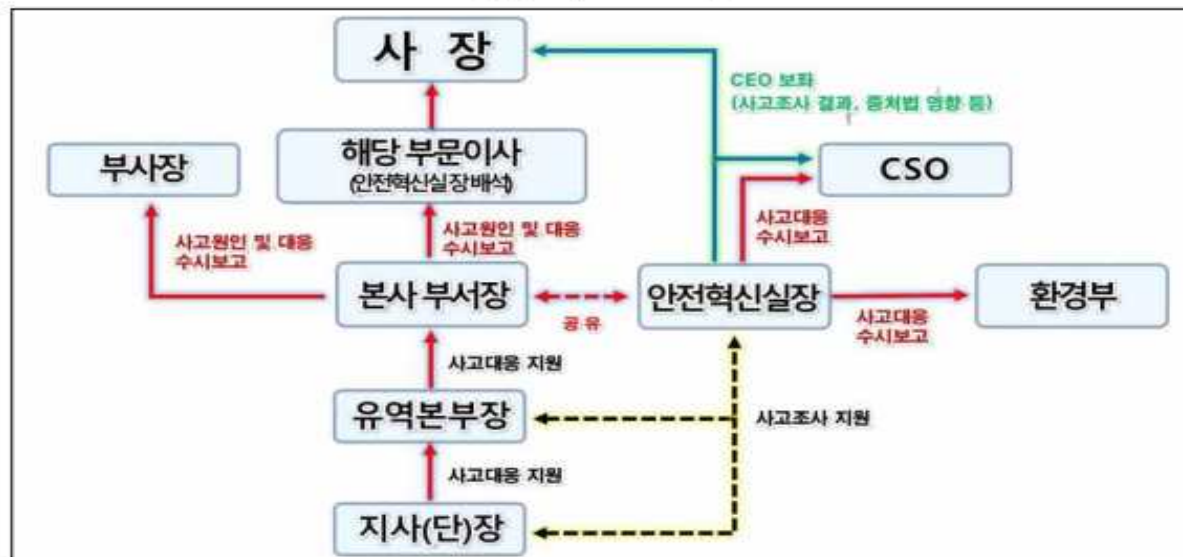
※ 상기 내용 이외의 사업장에서 위험 작업내용 및 위험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포함) 위의 구분에

따른다.

【최 초 보 고】



【수 시 보 고】



※ 「감사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실에 보고한다.

※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KRM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안 전 보 건 교 육 일 지

		관리감독자		부 서 장	
교 육 구 분		1. 정기교육(관리감독자 포함)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교육 5. 기타()			
교 육 인 원	구 분	인원	교 육 미 실 시 이 유		
	대상 인원				
	실시 인원				
	미 실시인원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 시)			
교육장소					
강 사	소속		직위		성명
교육내용	과목(사항)				
	교육방법		사용교재		
	교육내용 (개요)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부서 : @@@ 지사 (계약명(공사명) 기입)
2. 사고일시 :
3. 사고장소 :
4. 사고내용 :

5. 사고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소 속	직 급 (신분)	성 명	연 령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② 재산피해사고

재산구분	피해물품명	주 요 피 해 내 용	비 고

※ 재산구분 : 공사재산 또는 민간재산으로 구분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사후대책 등) :

붙임 : 사진대지

발 신		보고일자	년 월 일
수 신			

안 전 사 고 조 사 보 고 서

보고일자 : 년 월 일

제 1 부 사 고 구 분						
사고부서 : @@@지사(계약명(공사명) 기입)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사고종류 :				사고장소 :		
제 2 부 인 적 사 항						
사고관련자 및 피해자	구 분	직급(신분)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사고 당시의 임무			임무의 계속시간		보 직 기 간	
					년 개월	
제 3 부 사고내용 및 경위						
(예시) ○ 발생일자/장소 : '00. 00. 00(목), 00시 00분경 / 00시 00동 00-0 ○ 피해현황 : 근로자 1명 부상(골절) ○ 사고내용 - - ○ 사고발생 경위 - 00.00(목) 00:00 : 작업 후 휴식을 위하여 장비에서 하차 중 넘어졌으며 이후 통증 인지 - 00.00(목) 00:00 : 사고발생 보고 - 00.00(목) 00:00 : 병원 후송 후 정밀 검진 - 00.00(목) 00:00 : 정밀 검진 후 입원						

제 4 부 사 고 원 인 분 석 (제83조제1항제4호 등)	
제 5 부 사 후 대 책	
제 6 부 기 타	
안 전 관 리 자	직 급 : 성 명 :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부서장)	직 급 : 성 명 : (인)

붙임 : 사진대지

※내용이 많으면 별첨으로 작성할 것.

재발방지대책

건 명	
사고개요(일시, 장소, 내용 포함)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00지사 / 00 공사

번호	신고인 (소속)	신 고 내 용 (중 지 내 용)	신고 일시	처리내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1	홍길동		'22.00.00 00:00		O,X (인)	000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2							
3							
4							
5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번호	품 목	지급일자	수 량	수령인			
				소 속	사 번	성 명	서 명

휴게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시 : 2000. 00. 00(월) / 점검자 : 000(담당자) / 확인자 : 000(노측대표)

구 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이용 원칙		○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여부	√	
		○ 수급인 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	
위치		○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정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 여부	√	
		○ 작업공정·위험반경으로부터 분리된 곳에 위치 여부	√	
		○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 여부(해당시)		
		○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 여부		
		○ 지상에 위치(권고사항)		
		○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 여부		
규모		○ 최소면적 6㎡이상(의자, 탁자 등을 포함한 면적), 천장고 2.1m 이상		
		○ 면적 산정시 노·사 협의 여부		
환경	온 습 도	○ 옥내 적정온도 유지(여름철 : 20~28℃, 겨울철 : 18~22℃)		
		○ 옥내 적정습도 유지(습도 50~50% 수준)		
		○ 냉난방 시설 설치		
		○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 확보		
	조 명	○ 조명(조도 100~200Lux)		
	소 음	○ 소음(소음 50dB 이하)		
가구 및 비품		○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의 설치 여부		
		○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 비치 여부 (해당시)		
		○ 생활가전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타올 등 비치		
관리		○ 남녀 구분하여 설치 여부		
		○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 별도 확보 여부		
		○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여부		
		○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매분기) 관리 여부		
조치 계획		○ 00사항 미비 → 00으로 조치예정('00.0월) * 점검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사용 가능

